

6.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 施行令中 改正令(案)

通商產業部 公告 第1997-12號 1997. 1. 29

주요골자

- 가. 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시 주위여건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흡수합병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“인근구역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시행 구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 구역으로 보며, 미동의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준용이 불필요한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와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은 “주택의 세대당 주거면적이 $150m^2$ 이하인 경우” 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인용함.
- 라.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추천·선정업무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의 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함.
- 바. 공제사업기금의 회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함.
- 사.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개정이유

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촉진과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.

주택회보